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80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모경중 · 박지원 · 박희승
진성준 · 위성곤 · 윤건영
김승원 · 황명선 · 남인순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3절 제2관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의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관하여 등기관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의 기간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연장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사용허가의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축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8조의2(기부채납 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의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관하여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의 기간을 기록한다.</u> <u>② 제1항의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 · 연장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사용허가의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u>